



# **[사]5·18서울기념사업회 2022년 정기총회**

**2022.1.23.[일] 오후5시 본회 교육장**

(03147)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7층(운현하늘빌딩)

TEL 02-774-5518      FAX 02-774-5519

E-mail : [518seoul@hanmail.net](mailto:518seoul@hanmail.net)

[www.518seoul.org](http://www.518seoul.org)

## 진행순서

- |                                   |           |
|-----------------------------------|-----------|
|                                   | 사 회- 정찬우  |
| 1. 성원보고                           | 상임이사- 김용만 |
| 2. 개회선언                           | 회장대행- 김청식 |
| 3. 국민의례                           | 사 회- 정찬우  |
| 4. 회장인사                           | 회장대행- 김청식 |
| 5. 보고사항                           |           |
| ■ 2021년도 감사보고                     | 감 사- 장신환  |
| 6. 의안심의                           | 회장대행- 김청식 |
| ■ 제1호. 정관개정의 건                    |           |
| ■ 제2호. 2021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           |
| ■ 제3호. 2022년도 사업(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
| ■ 제4호. 기타 안건                      |           |
| ■ 제5호. 2022년 임원선출의 건              | 선거관리위원회   |
| 7.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사 회- 정찬우  |
| 9. 폐회선언                           | 회장대행- 김청식 |
| 10. 광고                            | 상임이사- 김용만 |

## ● 감사보고서

# 감 사 보 고 서

본인 등은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의 정관 제33조 및 제반 규칙에 의거하여 2021.01.01.부터 2021.12.31.로 종결되는 2021년도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의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 문서와 장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결산서의 각 항은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 처리는 적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기타 의견

1.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에 따라 후원모집에 노력을 기울여 수입증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권유함.
2. 지출관리가 전액 통장과 카드로만 결제되어 투명하게 잘 관리된 사항으로 판단됨

2022. 01. 05 .

감 사 : 장 신 환

張信煥  
(서명)

감 사 : 이 남

이남  
(서명)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귀중

## ●제1호 의안 정관 개정안 심의 및 의결

※개정 내용을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음

○2021.11.6. 2021년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김상희(위원장), 김청식, 최영선, 상임이사 김용만을 정관개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의하였음

○ 위 4인은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초안하였음

○2022.1.8. 2022년 정기총회 부의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소위원회가 초안한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음

#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 정관(개정안)

---

2017. 07. 08. 제정

2021. 01. 22. 개정(예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 **(약칭은 5·18서울기념사업회 또는 5·18서기사, 영문명칭은 The May 18 Seoul Memorial Society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선양하며,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 및 추모사업
2. 올바른 민주의식 함양과 5·18정신계승을 위한 청소년 역사교육 사업
3. 국내외 민주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사업
4.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사업

5.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음해하는 반민주세력에 공동대처하는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유공자회원과 일반회원으로 한다.

1. 유공자회원은 국가보훈처 산하 서울지방청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5·18민주유공자로서 본회에 가입 신청과 등록을 마친 자
2. 일반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신청과 등록을 마친 자

제6조(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각급 회의와 사업에 참여하여 발언 및 의결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본회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5·18민주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

제9조(포상과 징계) 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회원권 정지(정권)
3. 제명
- ④ 3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제3호의 징계는 총회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이중 1인은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5. 상임이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과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선을 하지 않으며, 이 경우 제 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임기 만료로 인한 새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⑤ 임원 개선과 관련하여 본회의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해 재적 임원의 3분의2 이상을 한꺼번에 개선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27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27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직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업무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 및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나 궐위되었을 경우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 의결에 따른다.

②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에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4일 이내 총회소집이 불가능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된 총회에서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성원 자격을 획득한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임원이나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본회 사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해임 또는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당사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 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감사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이 경우 회장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제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에서 위임한 내부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11.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 재적이사 과반수의 합의로 부의하는 안건
14. 감사가 부의하는 안건
15.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고문 및 지도 위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 6 장 재 정

**제29조(수입금)**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 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2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 (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하여야 한다.

## 제 7 장 사무부서

**제35조 (사무부서)** ①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부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 8 장 보 칙

**제36조(법인의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7조(정관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회는 5·18서울기념사업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본회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의1(추가 경과조치) 제1차 개정 의결에 의한 임원선거는 개정 정관이 주무관청에 승인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행하고 법원에 등기하되, 해당 기간에는 선관위가 임원을 대표해 회무를 처리한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7년 7월 8일

발기인(대표)최병진 (인)	발기인 김명자 (인)	발기인 최수동 (인)
발기인 장신환 (인)	발기인 최영선 (인)	발기인 김청식 (인)
발기인 정찬우 (인)		

개정 2022년 1월 22일

개정안이 총회에서 통과되면 서울시 민관협력과의 변경승인을 획득해야 서울시 등록 사단법인의 공식 정관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 [정관개정안 신구조문 비교표]

현행	변경(안)
<p><b>제1조(명칭)</b>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p>	<p><b>제1조(명칭)</b> 이 법인의 명칭은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b>(약칭은 5·18서울기념사업회 또는 5·18서기사, 영문명칭은 The May 18 seoul Memorial Society로 한다.)</b></p>
<p><b>제5조(회원의 자격)</b>본회의 회원은 <u>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회원은 국가보훈처 산하 서울지방청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5·18민주유공자로서 본회에 가입신청을 한 자</li> <li>2. 후원회원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아니나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신청을 한 자</li> </ol>	<p><b>제5조(회원의 자격)</b>본회의 회원은 <u>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회원은 국가보훈처 산하 서울지방청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5·18민주유공자로서 본회에 가입 신청과 <u>등록을 마친 자</u></li> <li>2. <u>일반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신청과 등록을 마친 자.</u></li> </ol>
<p><b>제6조(회원의 권리)</b>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회원은 각급 회의와 사업에 참여하여 발언 및 의결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li> <li>2. 후원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총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li> <li>3.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본회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li> </ol>	<p><b>제6조(회원의 권리)</b> 모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각급 회의와 사업에 참여하여 발언 및 의결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u></li> <li>2. <u>본회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u></li> </ol>
<p><b>제7조(회원의 의무)</b>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li> <li>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li> <li>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li> <li>4. 5.18민주유공자로서의 품위유지</li> </ol>	<p><b>제7조(회원의 의무)</b>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li> <li>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li> <li>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li> <li>4. 5.18민주유공자 <u>및 그에 준하는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u></li> </ol>
<p><b>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b>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장 1인</li> </ol>	<p><b>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b>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장 1인</li> </ol>

<p>2. 부회장 2인(이중 1인은 수석부회장으로 한다)</p> <p>3. 이사 5인 이상 <u>20인</u>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p> <p>4. 감사 2인</p> <p>5. 상임이사 1인</p>	<p>2. 부회장 2인(이중 1인은 수석부회장으로 한다)</p> <p>3. 이사 5인 이상 <u>15인</u>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p> <p>4. 감사 2인</p> <p>5. 상임이사 1인</p>
<p><b>제13조(임원의 직무)</b>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p>	<p><b>제13조(임원의 직무).</b>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27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p><b>제17조(총회의 구성)</b>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임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p>	<p><b>제17조(총회의 구성)</b>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임원과 <b>총회 성원자격이 있는</b> 회원으로 구성한다.</p>
<p><b>제20조(의결정족수)</b> ① 총회는 회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b>제20조(의결정족수)</b> ① 총회는 <b>이사회에 의해 성원 자격을 획득한 회원</b>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b>제27조(이사회 의결사항)</b>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7. <b>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b></p>	<p><b>제27조(이사회 의결사항)</b>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7. <b>총회 성원자격 및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b></p>
<p><b>제28조(고문 및 지도 위원)</b>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b>고문 및 지도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b></p>	<p><b>제28조(고문 및 지도 위원)</b>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b>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 또는 해촉할 수 있다.</b></p>
<p><b>제38조(규칙의 제정)</b>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b>규칙</b>으로 정한다.</p>	<p><b>제38조(규정의 제정)</b>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b>규정</b>으로 정한다.</p>
<p><b>보칙 제2조(경과조치)</b> ① 본회는 5·18 서울기념사업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본다.</p> <p>② 본회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p>	<p><b>보칙 제2조(경과조치)</b></p> <p><b>제2조의1(추가 경과조치)</b> 제1차 개정 의결에 의한 임원선거는 개정 정관이 주무관청에 승인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행하고 법원에 등기하되, 해당 기간에는 선관위가 임원을 대표해 회무를 처리한다.</p>

## ●제2호 의안 2021년 결산 보고 (별지 참조, 회의 사용후 회수)

서울시 보조금 사업은 서울시에서 감사를 실시하므로 본회 감사는 진행하지 않았음  
본회 자체자금 집행에 대해서만 보고함을 양해 바랍니다.

## ●제3호 의안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 ○5·18민중항쟁 제42주년 기념행사

1) 올해 공법단체 출범 및 서울시 지부 등록이 지연됨에 따라 5·18 제42주년 서울행사는 본회가 서울시와 협약 맺고 행사를 집행하기로 함(별지 참조, 회의 사용후 회수)  
행사보조금 총액 2억 2200만원(전년 대비 1400만원 증액)  
본회 자부담금 3180만원(전체 대비 12.5%) 총액 2억 5380만원 예정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및 추진방법	사업기간	사업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추진횟수 및 시간
기념식	-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서울기념식 - 국민의례추모분향&헌화기념선언기념사/추모사/기념공연/만세삼창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주먹밥 나눔	5.18(수) 10시	서울광장	5·18유공자, 내외빈 시민 2,000명	1회 (1일)
5·18추모행사	- 518민주영령 추모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5대 종단별) - 서울광장 분향소 운영(5.16~18 3일간) - 차량경적 추모이벤트(5.18 오후 5:18 TBS)	5.1(일) ~5.31(화)	서울광장 기념식장 등	불특정 다수 시민	1회 (3일)
5·18사적지 순례	- 국립5·18민주묘지 및 5·18사적지 참배	5~6월 중	국립518묘지 등	회원 및 민주시민	7회 (각 1박2일)
5·18기념 제18회 서울청소년대회	- 5·18영화제(3분영화제에서 확대) - 5·18정신이 담긴 동영상작품 온라인 공모 - 작품공모기간 : 1.3(월) ~ 3.31(목) - 시상식 및 수상작 상영 : 서울시청 다목적홀 - 수상자 시상 및 격려	1월초 ~5월말	서울시청 다목적홀 (시상식장)	수도권지역 학생, 청소년, 청년 및 일반시민	1회 (3개월)
5·18기념 문화·학술행사	- 기간 : 연중 - 5·18기념 전시회(518민주화운동사 등) - 5·18트라우마 구술채록 - 김종태 열사 결상 제작 설치 - 행사기록집 발간	5·18기념일 전후	서울광장,서 대문형무소역 사관 이대앞 사거리 등	불특정 다수 시민	1회 (연중)

### ○서울시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 1)올해 운영보조금 4500만원(전년 대비 800만원 증액)
  - 2) 1분기 지급액 1225만원은 본회에 지급되고 부상자회 서울지부와 나누어 사용될 것임, 2분기 이후에는 공법단체 서울시 지부가 등록되면 공법단체로 지급됨
  - 3) 2분기부터는 사무처 운영비 전액을 본회가 직접 부담해야 함
- 2022년 본회 자체 예산을 별도로 구성함 **[별지 참조, 회의 사용후 회수]**
- 4) 총회 이후 회비 내는 일반회원 확장 캠페인 필요

### ○5·18서기사 기타 활동

- 1)5·18 제42주년 서울행사 이외 연대활동 강화
- [5·18관련] 5·18기록관, 5·18기념재단, 5·18진상규명조사위, 5·18유족회, 부상자회, 근로자회, 전국협의회
- [열사관련] 김의기열사기념사업회, 김종태열사추모사업회, 임기윤목사추모사업회, 박관현열사추모사업회, 안병하기념사업회, 김사복추모사업회, 전태일재단, 장준하기념사업회, 인권재단 사람(박래전 열사)
- [기타] 근현대사미술관, 김대중 평화센터, 김대중추모사업회, 한국스포츠교류협회, 5공 피해자단체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2) 서기사 차세대를 향한 가칭 청년5·18 결성 추진

## ●제4호 의안 기타 안건

현재까지 제안되어 이사회에서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한 안건 없음

## ●제5호 임원 선출에 관한 건

### ○정관개정 위한 소위원회 제안

- 정관은 주무관청(서울시 민관협력과) 승인을 획득해야 유효
- 현재 정관상 선거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그동안 서기사의 선거 관행은 이렇게 진행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이사회에서 선관위원 위촉</li><li>2) 임원 입후보자는 본인의 취임승락서와 회원 3인의 추천서 제출로 후보 등록</li><li>3) 전년도 월회비 5회 이상 또는 연회비 10만원 일시납 확인으로 후보 등록</li><li>4) 총회 현장에서 정견 발표 후 투표</li></ol> |
|--|

- 위 과정을 거치는 경우 이번 총회에서 임원선거 경우 일반회원들의 임원 진입 불가
- 따라서 정관 승인 직후 1개월 이내 임시총회 열어 개정 정관에 의한 선거 요망
- 해당 기간중 선관위가 사실상의 임원 역할로 회무 집행, 기존 사무처는 업무 보조
- 임원 출마 일반회원의 입후보 자격은 선관위가 결정
- 일반 회원의 입회 및 연회비 일시납과 동시 출마 가능 여부는 선관위가 판단
- 당장 급한 것 아니면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신입 이사회에서 예산 등 집행
- 신 임원진이 첫 이사회에서 운영규정 승인

○2022.1.8. 정기총회 위한 임시이사회에서 김청식, 김상희 2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고, 선관위에 임원 선거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음

선관위는 개정안이 통과되고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일반회원의 임원 선출이 가능해지므로 개정안의 효력 발생후 한번의 선거로 일반회원 포함한 임원의 선출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

## ●기타 광고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49인까지만 현장참석이 가능합니다
  - 식사를 제공할 수 없어 떡세트와 수건, 2021년 기록집으로 대신합니다
- 임원선출을 개정된 정관의 효력 발휘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임시총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별지 2021년 결산자료

2021년 통합정산(보조금 불포함)					
목	세목	금액	목	세목	금액
회비	cms회비	19,154,000	인건비	단순인건비(상여금,수수료 포함)	40,650,000
	월,연회비 (고재달,채 상현,안길 정 김경옥)	420,000		보훈업무수당	
	특별회비			국내여비	35,000
보조금	사업보조금		일반운영비	사무용품구입비(도장)	155,500
	운영보조금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지원금	장학지원금	8,000,000		인쇄비 및 유인비	
	지원금2			임차료(사무실,버스, 장소, 장비)	
	지원금3			회의비(식비,다과비)	2,870,340
기부금 (임성래,전지 훈,강종구,홍 수표,류렛,월 드,최수동)	개별기부금	7,206,586		공공요금 및 제세(cms사용료,수수료,세무법인)	2,802,939
	단체기부금	15,000,000		사무기기수리비(유지관리비)	333,000
	현물기부금			차량비(택시비)	549,905
기타 (법인세환 급,이자수 익)		21,859		특근매식비	
				강사비(심사)	
				원고료	
	월합계	49,802,445		회의참석수당	
고정	전기이월금	19,241,516		행사용품구입비	
	합계	69,043,961	기타행사지원경비(경조사비, 연대비)	3,994,480	
			광고료 등	92,500	
			시상품,포상금	8,000,000	
			합계	59483664	
			차기이월금	9,560,297	